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2014-11-29
MSDS - 3051482		개정 일자	2016-10-01
Page 1 / 5		개정 횟수	2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제 품 명	싱글방수마스터 적갈색	색상	
일반적인특성	방수재/방수재/수용성/박막형/싱글방수마스터		
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	용도: 아스팔트 싱글 보수용 사용상의 제한: 해당없음		
공급자/유통자정보	삼화페인트공업(주) 및 대리점		
제조사 정보	삼화페인트공업(주)	전화번호	(031) 499 - 0394
주 소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(성곡동)	작성부서	바닥방수재도료파트/ 김관수

2. 유해.위험성

가. 유해.위험성 분류

① 분류되지 않음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요소

① 그림문자 : 해당없음

② 신호어 : 없음

③ 유해, 위험문구 : 해당없음

④ 예방조치문구 : 해당없음.

다. 유해성. 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. 위험성

◎ NFPA 등급 (0~4 단계)
-보건:0, 화재:0, 반응성: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 NO	함유량(%)	비고
Water	물	7732-18-5	31 ~ 40%	
2-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-propenenitrile		26299-47-8	21 ~ 30%	
Ethylene propylene-diene terpolymer	에틸렌 프로필렌-디엔 테르폴리머	25038-36-2	1 ~ 10%	
Limestone	석회암 ; 석회석	1317-65-3	21 ~ 30%	
영업비밀		—	1 ~ 10%	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
① 화학물질이 잔류하지 않을때 까지 충분히 씻을 것.

②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최소한 15분이상 씻은후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MSDS - 3051482 Page 2 / 5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2014-11-29
		개정 일자	2016-10-01
		개정 횟수	2

4. 응급조치 요령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- ①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기며 연성세제 또는 다량의 물로 씻을 것.
- ② 용제나 신나를 사용하지 말 것.

다. 흡입 했을 때 :

- ①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한다.
- ② 호흡이 멎었거나 불규칙하면 인공호흡을 시킨다.
- ③ 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.

라. 먹었을 때 :

- ①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.
- ②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
- ③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

마. 의사의 주의사항 :

- ① 호흡을 위한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고 필요시 위세척을 고려할 것.

5. 폭발.화재시 대처 방법

가. 적절한 소화제: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, 이산화탄소, 물, 일반적인 포말

나.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: 해당없음

다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(예,연소시 발생 유해물질): 연소 및 가열시 탄소산화물 발생

라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①호흡기보호 :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
- ②눈보호 : 보호용 안경을 착용할 것
- ③손보호 : 보호장갑 또는 PVC장갑을 착용할 것
- ④신체보호 : 불침투성 보호의와 작업화, 장갑등의 장비를 착용할 것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: 호흡기구 및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,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 금지할 것, 유출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: 오염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오염물질이 타 지역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을 것. 도양 또는 수중 유출을 막을 것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: 모래, 보루, 기름처리제 등의 흡수제로 닦아내고 관련법규에 의거한 폐기용 용기에 담아 폐기할 것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: 보호장비착용 화원. 열 발생 및 스파크 주의. 큰 충격과 압력주의.

나. 안전한 저장방법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: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

피해야 할 조건 : 혼합금지 물질과 접촉을 피하십시오.

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노출기준

구성성분	CAS NO	국내노출기준	ACGIH 노출기준
Water	7732-18-5	자료없음	자료없음
2-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-propenenitrile	26299-47-8	자료없음	자료없음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2014-11-29
MSDS - 3051482		개정 일자	2016-10-01
Page 5 / 5		개정 횟수	2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:

- ① 유엔번호 : 해당안됨
- ② 품 명 : 싱글방수마스터 적갈색
- ③ 정 표 찰 : 해당안됨
- ④ 용기등급 : 해당안됨

나. 운송시 주의사항 : 충격에 주의하고 상온에서 운송할 것

다.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

- ① 유엔번호 : 해당안됨
- ② 유엔적정 선정명 : 해당안됨
- ③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안됨
- ④ 용기등급 : 해당안됨

라. 해양오염물질: 비대상

마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안전대책

- 화재시비상조치: F-E
- 유출시비상조치: S-E

15. 법적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제41조 및 동법시행령

Limestone : , 작업환경측정물질, 국내노출기준물질,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비위험물

비위험물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페페인트와 페래커)에 해당됨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9호 화학물질의 분류,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

본 MSDS는 KOSHA, IUCLID, ESIS, CEFIC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 : 제정일자 참고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: 2 회 2016/10/01

라. 기타